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강점

차 성 란(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 대전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외국인과의 결혼은 이제 보편적 결혼 형태가 되었다.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005년을 정점으로 다소 줄어들고 있으나 2007년 기준 외국인과의 혼인은 전체 혼인건수의 11.1%를 차지하였다. 특히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외환위기 이후 서서히 증가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우 급속한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대비 2001년도에는 37%, 2002년도에 10%, 2003년도에는 무려 74%, 2004년도 33%, 2005년도 2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06년도부터는 ‘방문취업제’¹⁾시행이 예고됨에 따라 감소하기 시작해, 2007년 현재 외국인 처와의 혼인은 총 29천 여건에 이른다. 이는 2000년 7천3백건에 비하면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표 1> 외국인과의 혼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혼인건수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332,752	345,592
외국인과의 혼인	12,319	15,234	15,913	25,658	35,447	43,121	39,690	38,491
총혼인건수 대비 구성비	3.7	4.8	5.2	8.4	11.4	13.6	11.9	11.1
한국남자+외국여자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29140
증 감 률	26.5	37.0	10.1	74.4	33.2	21.8	-3.1	-3.5
한국여자+외국남자	5,015	5,228	4,896	6,444	9,853	11,941	9,482	9351
증 감 률	4.6	4.2	-6.4	31.6	52.9	21.2	-20.6	-1.4

출처: 통계청(2007)

결혼이주여성이 급격히 증가하던 초기에 비해 이제는 여성들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처음에는 중국 조선족, 한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베트남 여성과의 혼인이 2006년도에 74%의 증가율(여성가족부, 2006)을 보였으며,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연방러시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타이, 키르기스스탄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1) 2006년도에 ‘방문취업제’ 시행예고가 되었다. 이에 예전에는 결혼을 취업의 수단으로 삼았던 일부 중국인들의 결혼을 통한 입국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표 2>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단위 : 건,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30,208	100.0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14,608	48.4	-29.2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0,131	33.5	74.0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1,484	4.9	18.2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1,157	3.8	16.0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594	2.0	5.9
캄보디아	*	*	*	19	72	157	394	1.3	151.0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334	1.1	17.2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314	1.0	-5.7
기 타	779	936	1,046	1,263	1,250	1,135	1,192	3.9	5.0

* 기타에 포함

출처: 여성가족부(2006 혼인통계결과)

결혼이민자가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다.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는 관심주제가 합해져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졌다. 특히 농촌지역의 지자체들은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에 수백만원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며 이 일에 앞장서고 나섰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신문, 2008. 4. 1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이 농촌총각의 결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남성들의 초혼비율은 낮아지고 있는데 비해 재혼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배우자간 연령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에서의 특징 중 하나가 배우자와의 큰 연령차이인 것이다. 즉, 사별, 이혼한 남성들이 새로운 배우자를 찾기 위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어 국제결혼이 좀 더 일반적인 결혼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외국 여자와 혼인한 한국 남자의 혼인종류별 구성비 (단위 : %)

혼인종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초혼구성비(a)	75.8	67.4	66.8	59.0	54.1	56.2	64.0
재혼구성비(b)	24.2	32.6	33.2	41.0	45.9	43.8	36.0
비(a/b)	3.1	2.1	2.0	1.4	1.2	1.3	1.8

출처: 여성가족부(2006 혼인통계결과)

<표 4>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 (단위 :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남자+외국 여자	6.7	7.4	7.8	8.2	8.3	9.1	11.5
한국 남자+한국 여자	2.7	2.6	2.6	2.6	2.6	2.5	2.4

출처: 여성가족부(2006 혼인통계결과)

이같은 모습들을 볼 때 결혼이민자가정의 건강한 가정생활이라는 과제는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문제, 농촌의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 국제결혼은 이미 현시대의 하나의 사적인 흐름이라는 전제가 요구된다. 보편적 결혼형태로 자리잡아 간다면, 그로인한 국제결혼으로서의 결혼안정성, 문화적 차이의 수용, 2세의 학교생활적응 및 적절한 취업을 통한 사회생활적응 등은 단기적이며 미시적인 해결중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다문화 선진국들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가족정책의 틀 속에서 조화된 다문화사회를 지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2005년 당시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이 나타나고, 기존의 가족이 수행해 왔던 복지적 기능들이 약화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분담과 실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가족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주무부처로서 예방적 차원에서,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로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한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정책의 큰 틀 속에서 예방적 서비스, 가정단위의 통합적인 서비스라는 한 단계 발전된 복지모형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혼이민자 가정을 포함하여 이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해 맞춤형의 통합적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그림 1> 2006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가족정책을 포함하여 많은 정부의 제도,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중복시행됨으로써 예산 낭비, 서비스의 편중, 기관의 경쟁적 서비스에 따른 비효율성 등에 대해 이미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강점을 중심으로 이것이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현황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정부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대책회의에서 설립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발표되고, 2006년 5월 결혼이민자가족지원대책 주관부처로 여성가족부가 지정된 이후 2006년도에 21개 센터로 운영을 시작하였다. 2008년 1월 현재 80개소로 증가하였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이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변경이 예정되어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으로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일 제정, 2008.9.22 시행예정)에 의하면 경과조치로서 법 시행 당시 위탁운영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간주할 예정임을 밝혔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2005년 1월 중앙 및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가 선정되어 2008년 4월 현재 67개소에 이른다. 여성가족부 당시 2010년까지 270개소 설립예정이었으나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 110개소, 2012년도 132개소로 당초 계획이 축소된 상태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총 80개소 중 10개소로 12.5%에 불과하다.

<표 5> 센터 현황

(2008년 4월 현재)

구 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수	80개소	67개소	10개소

<표 6>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 역	센터명
서 울	동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 구	달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대 전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울 산	울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 기도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 남	경상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
	김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 북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3.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

많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 위탁을 받지 않았지만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센 터	사 업	프로그램명
강남 건강가정 지원센터	문화정서지원사업	자조모임, 멘토링, 품앗이사업, 요리교실, 지역문화탐방, 보건의료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역량강화사업	다문화강사 및 원어민강사 양성, 직업교육, 컴퓨터 교육
	다문화인식개선	다문화축제, 다문화인형극, 심포지엄
	자녀지원	공부방 운영, 이중언어교육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아동양육 설계 지도, 부모역할 교육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형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실운영
	컴퓨터운영 실태조사 홍보및네트워크	결혼이민자 컴퓨터 결혼이민자가족 실태 및 요구도 조사 등 지역협의체 구성, 홍보 등
강북구 건강가정 지원센터	건강가정교육 건강가정문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실, 결혼이민자 가족교실 결혼이민자 가족캠프
관악구	가정교육	결혼이민자가족교육
	가정문화	•결혼이민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년 4회) - 문화체험프로그램 및 전통음식만들기 프로그램 - 명절음식 및 김장김치 만들기, 도예마을
광진구	가정교육	결혼이주여성 정보화교육
구로구	가족교육	•결혼이민자가족 교육 -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 한국어교육 초급, 중급 : 한국어 배우기 - 요리교실 : 한국요리 및 명절음식 배우기 - 컴퓨터 교실 : 컴퓨터 기초 및 인터넷 배우기 - 한국문화체험 : 박물관 고궁 나들이 - 멘토링 사업 : 친정엄마 되어주기
도봉구	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정교육 한국어교육, 요리교육
마포구	가정교육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 매주 화요일 : 한국어 튜터링 - 매주 목요일 : 한국어 교실
		다양한 가족문화조성사업 : 국제결혼가정 전통문화 체험, 국제결혼 가정과 함께 김장 담그기
성북구	가족문화사업	다양한 가족문화조성사업 : 국제결혼가정 전통문화 체험, 국제결혼 가정과 함께 김장 담그기
용산구	가족교육	결혼이민자가족 우리부부 서로 이해하기
은평구	가정교육	외국인가족교육
	가정문화사업	문화체험 : 외국인가정
종로구	가정상담	다양한 가족지원상담 : 결혼이민자, 재혼가정, 입양가정 등 나타날 수 있는 가족간의 문제에 대한 상담
중 구	건강가정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한국생활완전정복 1’ :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생활 문화 익히기
중랑구	건강가정상담	집단 상담 : 다문화 가정
	건강가정교육	결혼이민자 교육
	건강가정문화	다양한 가족을 위한 생활문화 이해

강남구,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교육, 문화, 상담 또는 정서지원 사업 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영역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외에 집단상담 프로그램까지도 운영하고 있었다. 종로구의 경우 재혼 가정, 입양가정 등 다른 유형의 가정들과 함께 가족지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히 가족상담의 경우 결혼이민자가정을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독립된 집단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른 건강가정지원센터들도 건강센터 프로그램으로 한국어교육 외에 결혼이민자를 위한 가족교육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가정의 건강가정서비스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가정도 그 한 유형으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4. 센터 운영 측면에서의 강점

4.1. 센터운영의 경영효율성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연간 예산은 매우 적은 규모로 편성되어 있다.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전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극히 적은 상태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공간활용, 시설설치, 인적자원의 활용, 프로그램의 공동운영 등에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어 결혼이민자센터의 제한된 예산으로도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서비스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된다.

4.1.1. 공간 활용

사무공간을 비롯하여 교육실, 상담실, 강당 등의 공간을 두 센터가 공유함으로써 공간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두 센터의 프로그램들은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진행가능한 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주로 주간에 이루어지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부교육이나 예비부부교육 등은 퇴근 이후의 저녁시간에 이루어지게 된다. 때문에 교육시간의 일정 조정을 통해 교육공간의 활용율을 높일 수 있다. 부부 및 가족상담의 경우에도 여성취업율이 높기 때문에 직장퇴근후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상담실과 공유가 가능하다.

4.1.2. 시설 및 집기활용

복사기, 프린터기, 체본기, 코팅기 등 기타 사무를 위한 집기류의 공동사용이 가능하므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1.3. 직원간 협력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상태이므로 업무가 집중되거나, 일시적으로 공백이

있는 경우, 업무지원이나 협조를 해줄 수 있다. 결혼이민자 가정 방문, 출장, 기타 업무를 위한 외출 시 업무에 지장을 가져온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 같은 사무실 공간에서 두 센터간 직원들의 상호 업무지원을 할 수 있음으로써 융통성이 발휘된다.

4.2. 사업프로그램 시행의 효율성

4.2.1. 프로그램 참여율 증대

건강지원센터 프로그램에 결혼이민자가 참여함으로써 단일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교육사업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지 않으나 예비학부모를 위한 교육과 같이 자녀를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가정을 대상으로 함께 진행된 바 있다. 그밖에 생활주기별 교육 역시 모든 가정의 가족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현재는 결혼이주기간이 짧은 여성들의 증가율이 높아 이들을 위한 부부교육, 부모교육-예를 들어 어린 신부를 위한 성교육, 임신, 출산 및 양육교육-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적응한 결혼이민가정이라면 일반가정과 함께 다양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시 센터의 경우, 2008년 연초 가족연날리기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두 센터의 모든 가정이 참여하여 다국적 언어로 한해 좋은 운을 기원하는 글을 적어 연날리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매월 격주로 진행되는 문화사업인 가족봉사단 프로그램을 두 센터의 모든 가족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였다. 보훈가족에게 쿠키만들어 전달하기, 스프레이만들어 보육시설에 전달하기, 등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양 센터의 가족봉사단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는 제한된 예산으로 두 센터간 프로그램을 상호교류함으로써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잇점을 갖는다.

4.2.2. 센터내 직원 인력의 생산성 제고

두 센터 모두 가족을 단위로 한 사업이다. 때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함께 참여하여 보완적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어느 한쪽이 다른쪽의 지원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례가 가능하다.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을 위한 두 센터의 담당직원들은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시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인적자원을 협력, 공유할 수 있다. 공동작업은 단일작업에 비해 양자간 상호작용으로 양적, 질적인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프로그램 기획시 Brain pool을 통해 사업내용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전시의 경우 문화사업인 결혼이민자 캠프를 두 센터의 공동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바 있다.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두 센터의 직원이 함께 프로그램 기획, 홍보, 준비물 구입, 행사 운영 등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정 및 일반가정의 특성을 고려하고 양자간 협력,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 기획에 포함시켜 진행할 수 있었다.

4.2.3.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잇점

결혼이민자가정과 일반가정은 모두 이 사회에서 건강한 가정으로서 공공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찾는다. 또한 다문화사회에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문화에 대한 수용을 통해 미래 다문화사회의 갈등을 완화, 예방할 수 있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같은 부분에서 결혼이민자가정을 통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사회관계망과 같은 환경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대전시 센터의 프로그램에서는 가능한 두 센터의 사업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참여기회를 개방시켜 운영해오고 있다.

여름캠프 프로그램에서 일반가정의 가족원들은 결혼이민자 가정과 일대일 결연을 통해 행사 당일 처음 시작부터 행사를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한조를 이루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친정부모 결연과 같은 행사에서 그 자체만을 위한 행사를 준비하여 이민자가정과 친정어머니 결연을 하는 경우,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캠프에 함께 참여하여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숙식을 함께 하면서 도움을 주고 받음으로써 짧은 시간에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역시 문화사업의 하나인 가족자원봉사단 프로그램에도 결혼이민자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 참여한다. 가족자원봉사단 프로그램은 격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므로 이미 결연을 맺은 또는 여러 번 만남의 기회를 가졌던 두 가정의 가족원들이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는 지역사회내 사회관계망, 자원교환의 지원망으로 기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궁극적으로 다문화사회가 지향하는 문화간 수용성이 높은 사회를 만들게 된다.

4.2.4.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지원

부부갈등, 이혼, 국적 등 상담을 위해 결혼이민자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센터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을 접하는 과정에서 상담이 필요한 가정들이 파악된다. 학교에서의 부적응을 경험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경우 담당직원이 그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어렵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전문상담인력이 부적응 아동에 대한 상담, 놀이치료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봉사단 및 개인 자원봉사자들이 두 센터의 자원봉사 수요를 폭넓게 충족시킬 수 있다.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들은 영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많은 경우 연령이 매우 낮다. 때문에 여성들이 한국어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어린 자녀를 동반하게 된다. 교육시간 동안 아이돌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원으로 한방병원이 연계되어 있어 병원 서비스를 결혼이민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들의 건강상태는 경제적, 제도적인 문제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의 예를 들면 결혼이주여성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상담인력풀에서 상담을 지원하는 경우, 결혼이주여성과의 일대일 친정부모결연자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5. 결혼이민자가정 측면에서의 강점

첫째,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결혼이주여성들은 좀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결혼센터의 경우 한국어교육프로그램 외에 생활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의 사업대상자는 절대적인 숫자면에서 아직 일반가정에 비해 적다. 여기에 결혼센터의 적은 예산으로 소수의 결혼이민자가정을 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수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은 수이지만 결혼이민자가정이 참여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들의 프로그램 선택폭은 넓어지고, 참여기회는 증가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생활적응 및 사회통합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연구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들에게 좀 더 발전된 단계의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시행의 초기단계에서는 한국어교육, 전통문화교육, 지역생활정보제공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효과가 있지만 이들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이주여성들의 교육요구를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두 센터의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면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 문화프로그램들을 한단계 발전된 프로그램으로서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요구의 상당부분을 추가의 경제적, 시간적 노력 없이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건강센터의 일반가정과의 접촉증대로 한국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두 센터가 동일 공간, 동일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관계의 사회적 범주는 넓어지고, 일반가정과의 유대로 프로그램 참여 이후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경제적, 정서적 지원 또는 상호협력적 관계 유지가 가능해지면서 좀 더 빠른 시간내에 한국의 정서, 한국의 생활문화를 터득할 수 있게 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관계망을 확보하게 된다.

6. 다문화사회 측면에서의 강점

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지원은 개별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목적 외에 다양한 문화를 통합함으로써 안정적이며 경쟁력있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결혼이민자가정의 문제는 이제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다문화사회라는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재 문화화(re-culturalization)를 부정하고 진정한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과 사회전반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필요한 두가지 통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성과 문화적 다양성에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다(김이선 외, 2006).

Berry(2005)에 의하면 비주류집단인 이주자는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문화적응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포기하고 주류사회에 흡수되는 동화, 자신의 고유문화에 대한 가치를 우선하고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분리, 고유문화 유지 및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에 모두 무관심한 주류화, 그리고 다른 문화집단과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함께 자신의 고유문화 유지에도 노력을 기울이는 통합으로 설명된다.

다문화사회의 인적자본확대라는 차원에서 볼 때 비주류집단의 통합이라는 문화적응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민국가인 호주, 캐나다의 경우 문화적 다양성을 극복과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의 주요 동력’(김이선 외, 2006)으로 삼고 있음은 선례로서 참고할 만하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통합의 관점을 택하려면 이문화간 적응(cross-cultural adaptation), 즉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적 환경 속에서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비교적 안정되고 상호간에 기능적인 관계를 확립, 유지하는 것(Chai, 2001, 구차순 2007에서 재인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주자가 새로운 문화에서 심리적, 물리적인 안정을 유지하려면 이문화간 역동적이며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지지망에 대해 조사한 연구(구차순, 2007)에 의하면 본국친구, 비슷한 처지의 국제결혼한 외국인 친구와의 교류가 빈약한 사회적 지지망의 전부였다. 특히 입국 초반에는 의사소통이 어렵고, 임신, 출산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적인 생활을 하므로 사회적 교류가 거의 없이 지낸다. 지역의 공부방에 대부분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우리들을 도와주려는 단체’라는 수직적 관계로만 인식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은 새로운 문화적응에 있어 자신의 힘으로 이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상호작용없이 개인적인 관계능력범위 하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적 관계망 강화를 위해 친정부모 맏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하지만 일시적,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국인 동년배와의 만남은 유사한 관심을 토대로 정보와 지식을 호혜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해결을 위해 정책과제를 제시한 연구(김이선 외, 2006)는 이와 관련하여 ‘이주여성과 한국인 여성 공동의 단체조직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결혼이민자센터는 그 전단계로서 가능성을 탐색하는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가정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이문화에 대한 수용적 인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결혼이민자가정과 일반가정의 접촉기회를 증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두 센터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이용자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가능해진다.

이민정책 선경험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다문화정책이 이주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을 공통적인 도전과제로 여긴다. 민족간 분리와 이주민 배제문제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의 특별홍보기간 설정하고 다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 외에 일반 시민 대상의 다문화 음식, 놀이, 춤, 음악 등 대중적 관심이 높은 분야에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증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것도 각국의 관심사이다. 이주민 대상의 문화, 언어교육과 동시에 이들이 자신의 문화, 언어를 가르치도록 하고, 다문화민족이 함께 스포츠,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사례들이 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각국의 다양한 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과 문화프로그램의 형태로 참여기회를 증대시켜 시민들이 자발적 토대 위에 다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증진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7. 나가는 글

이주여성을 이문화집단,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라는 형식적인 관계(김이선 외, 2006)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 이웃, 친구, 사회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우러진 삶을 사는 것이 다문화사회의 이상적 모습일 것이다.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이주여성들만을 위한 접근방식보다는 결혼이민자가정이든 일반가정이든 건강한 가정이라는 커다란 통합적 틀 속에서 이문화간 적응을 지원하는 전략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이다. 또한 기존의 사후적, 잔여적 대상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탈피해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예방에 더 초점을 두는 서비스의 방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정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기 위한 첫번째 작업은 그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인식개선을 위한 차이의 수용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어를 배워가며, 낯선 한국의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정 다음의 일차환경으로서 기능한다면 다문화간 갈등을 예방, 또는 적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이민자가정과 일반가정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법은 갈등의 씨를 그대로 둔 채 자꾸 돌아나는 새싹만을 잘라내려는 일시적, 근시안적 시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차순(2007).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0권 319-360.
- 김이선 외(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 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6-02-07.
- 대전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보고서(2007)
- 대전광역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서(2007)
- 이태옥(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 연구-영광지역 여성을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논문
- Berry, J. W.(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07-712.

<인터넷 자료>

- 서울신문(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416010008)
'이혼남 결에도 외국인 신부' 2008. 4. 16.

여성가족부(www.moge.or.kr)

- 2006 혼인통계

- 여성결혼이민자가족 및 혼혈인·이주자의 사회통합지원방안, 2006년 4월 26일, 관련부처합동.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www.familynet.or.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tmfc.familynet.or.kr)

통계청(www.nso.go.kr)